

## 문산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

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문산읍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모집기간 : 2025년 6월 4일 ~ 2025년 6월 17일 (18시까지 시간 엄수)
2. 접수장소 :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
3. 모집인원 : 9~14명 이내(추첨 9명, 예비후보자 5명/개인공개모집분야)
4. 자격요건
  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**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**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.
  - 문산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-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문산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  - 문산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  - 문산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\* 등에 속한 사람

※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5. 위원의 임기 : 위촉일부터 2026.12.31.까지
6. 신청방법 :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**방문접수**(평일 근무시간 내 9시~18시까지) / 또는 **이메일 접수**(aura0424@korea.kr)
7.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(아래 표 참조)  
※ 신청서식은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파주시 홈페이지 '고시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구분	자격에 따른 증빙서류
공개모집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문산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)</li></ul></li><li>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문산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</li></ul></li><li>3. 문산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</li></ul></li><li>4. 문산읍 소재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·직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활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</ul></li></ol>

8. **선정방법** : 신청자격(개인분야)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 중 공개추첨

위원신청(접수) ▶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이수 ▶ 공개추첨 ▶ 위원 선정

※ 공개추첨일 : 2025년 6월(예정)/ 추첨일 별도 공지(누구나 참관 가능)

※ 모집인원 미달 시에는 추첨운영위원회 공개추첨 미운영

9. **주민자치 교육안내**

- 위원 모집신청 후 경기도 주민자치 기본교육(6시간)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및 선정 자격이 주어집니다.(미 이수 시 선정불가)

※ 온라인 수강: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([www.gseek.kr](http://www.gseek.kr)) 회원가입 후,  
“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” 6시간 수강 후 수료증 제출

10. **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**
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
-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의 의무 수행

11. **결과발표** :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, 파주시 홈페이지 및 문산읍 게시판 게시

12. **기타사항**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이 60% 이하가 되도록 추첨합니다.  
※ 모집 정원 미달 시도 특정 성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.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해당했던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업장 등을 그만두는 등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규정한 지원 자격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

13. **문의사항** : 문산읍 행정복지센터(☎ 031-940-5317)

2025년 5월 30일

**파주시 문산읍 주민자치회**